

인체해부실습과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한계

김원식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011년 2월 24일 접수, 2011년 3월 16일 수정접수, 2011년 3월 17일 게재승인)

간추림: 현행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그 입법취지가 단지 해부할 수 있는 경우만을 적시하고 있고, 인수가 없는 무연고 시체의 처리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해부실습교육을 통한 의학교육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거리가 있고, 현행 해부실습이 주로 기증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일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의 개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의학발전과 의사양성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서 해부실습이 갖는 중요성과 의의를 살리고,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현체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찾아보기 낱말: 해부실습,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현체

서 론

현재 의과대학에서 행하고 있는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한 정상해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령인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 법률'이라고 칭함)(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Korea 2010)을 보면, 제1조에 이 법의 제정목적을 '이 법은 사인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입법취지가 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조를 보면 해부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모든 사람이 유족의 승낙을 받되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민법(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Korea 2009) 제1060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이 있는 때'에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규정하여, 현실적으로 대상의 대부분이 생전에 자신의 의지로 유언을 통해 기증하고 있음에도 소수로 취급되고 있으며, 나아가 하위 규정의 부실로 인하여 유언에 의한 기증자도 현장에서는

유족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 또한 현실과 맞지 않다. 실습 후 유해처리에 있어서도 제14조에 인수가 없는 시체 등에 대한 규정만 있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언이나 유족 등에 의해 기증된 시신의 실습 후 유해처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이런 이유로 기증자들이 유언에 남긴 다양한 의사대로 유해처리를 하기 어려운 점 등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등에서는 의학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이미 1983년에 의학 및 치학 교육을 위한 현체에 관한 법률(Ministry of Justice of Japan 1999)이 제정되어 사후 자신의 육신을 의과대학에 해부실습교육을 위해 기증하는 이른바 현체운동이 활성화 되어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사회문화적 수준이 가파르게 향상되고 그동안 의과대학으로 사후에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는 일을 발목 잡았던 오래된 관습과 일부 종교적 오해가 빠르게 와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런 법률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따라서는 종교적으로 또는 비종교적으로 사후시신기증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그들 기증자들에 의해 해부실습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현행 법률'의 미비한 부분 또는 현실과 걸맞지 않은 부분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미 오래 전부터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시신기증운동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그러므로써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저자는 현행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그동안의 개정과정을 살펴보고, 또한 전국 41개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을 대상으로 각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부실습용 시체의 확보시 사후시신기증 의사를 전달받는 방법, 사후시신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제출한 유언장을 포함한 서류를 관리하는 방법, 사후시신기증 등록자가 사망했을 때 시체의 인수 태도 및 실습후 시체의 처리 방법, 사후시신기증자에 대한 해부적격심사위원회(가칭)의 구성 여부 등 해부실습과 직결된 현황들과 시신기증운동과 관련된 제반 실태 등을 저자가 만든 설문(설문 내용은 Tables 1~7을 합한 것임)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현행 법률’과 부합되지 않는 점은 무엇이고 또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도출하여 보았다. 설문에 응한 대학은 28개 대학이었으며 각 문항은 백분율로 비교하였다. 그러나 일부 문항은 중복 답변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 비율의 합계에 의미를 두지 않고 비교 분석하였다(Tables 1~7). 이와 함께 저자는 이미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학 및 치학 교육을 위한 현체에 관한 법률(Ministry of Justice of Japan 1999)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체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결 과

1.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각 조문 분석과 문제점

여기서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Korea 2010)의 각 조항을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처음에는 시체해부보존법(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Korea 1962)이라는 이름으로 1962년 2월 9일에 제정되어 동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시체(임신 4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보존과 환자의 치료를 위한 시체의 부분분리 또는 사인의 조사 및 병리학적, 해부학적 연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의 향상과 의학(치료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과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로부터 33년 뒤인 1995년 1월 5일에 이 법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Korea 1995)로 전부개정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는 그 제정목적이 ‘이 법은 사인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보존 및 부분분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의학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발전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변화한 33년만의 전부개정이 문구의 배열 변경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지금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률’도 3회의 일부개정과 8회의 타법개정 등 11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률’은 그 제정목적이 ‘이 법은 사인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1995년 2차 개정 때와 똑같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그 최초 제정시기인 1962년부터 지금까지 해부를 통한 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는 수준을 사인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의 적정을 기하는 정도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사의 대량 양성과 획기적 의학 발전에 따른 해부실습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해부실습교육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문화적 인식 수준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이 법률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해부의 대상이다. ‘현행 법률’ 제4조를 보면 제1항제1호 일반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사후 시체를 해부할 수 있도록 했을 때와 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시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는 유족의 승낙없이 해부할 수 있고 나머지 경우에는 반드시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만 해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정 당시 무연고사망자가 다수이고 유언으로 자신의 사후시신을 기증한 사람들의 수가 극히 적었을 때 기증자들을 유족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해

부대상이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유언으로 자신의 사후 육신을 기증한 기증자들의 시신으로 확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조항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는 생각이며 나아가 이를 근거로 해부실습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음, ‘현행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이상 발견시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1항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시체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시체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범죄 또는 전염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 시체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상 해부실습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전국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들이 많은 수가 비의사인 점을 감안하면 이 규정은 현실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실습 후 유해처리의 한계이다. ‘현행 법률’은 제14조제1항에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교부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그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그 시체를 화장하여 유해를 납골당에 안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유해를 납골당에 안치해야 되는 경우를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했을 때로 국한시키고 있을 뿐, 유언에 의해 기증되거나 유족에 의해 기증된 시신의 실습 후 유해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기증자들이 유언에 남긴 다양한 의사대로 유해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문제라는 생각이다.

2. 설문조사 분석과 도출된 문제점

저자는 앞서 언급한 몇가지 문제점 외에도 해부실습

과 관련되어 ‘현행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현실과 거리가 먼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 41개 모든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28개교가 응답하여 응답률은 68.3%였다. 설문내용은 첫째, 사후시신기증의사를 전달받는 방법, 둘째, 기증의사가 있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관리하는 방법, 셋째, 기증등록자 사망시 시체의 인수 태도, 넷째, 인수한 시체의 해부실습후 처리 방법, 다섯째, 대학내 해부적격심사위원회의 유무, 여섯째, 기증등록자 모임 유무, 일곱째,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등 7개 문항이었다 (Tables 1~7). 이들 중, 첫째에서 다섯째 문항까지는 해부실습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문항들이고 여섯째와 일곱째 문항은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현재관련법 제정과 관련되는 문항들이다.

1) 사후시신기증 의사를 전달받는 방법

본 설문은 ‘현행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 일반인이 민법 (Ministry of Government Registration of Korea 2009) 제1060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이 있는 때는 유족의 승낙 없이 해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28개 의과대학에서 45가지 방법으로 기증의사를 전달받고 있어 많은 대학에서 여러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기증의사를 전달받고 있었는데, 그중 ‘본인이 작성 제출하는 대학소정양식의 유언’이 26개교로 92.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은 ‘타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대학소정양식의 유언’이 11개교로 39.3%, ‘본인이 제출하는 자필증서 유언’이 5개교로 17.9%였으며, ‘타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자필유언증서’도 2개교, ‘녹음된 유언’이 1개교 있었다. 이에 비해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이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한 예도 없었다 (Table 1). 이같은 결과는 많은 대학에서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에 규정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Table 1. Methods receiving donation will of the 28 medical schools in Korea

Methods	No.	Percent	Remarks
Self-submitting self-written will	5	17.9	
Self-submitting college-made will	26	92.9	
Others or mail-submitting self-written will	2	7.1	
Others or mail-submitting college-made will	11	39.3	Answers can be overlapped
Recorded will	1	3.6	
Notary will	0	0.0	
Oral stated will	0	0.0	
The others	0	0.0	

않고 편의에 의해 의과대학 자체에서 작성한 임의 문구의 유언장에 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 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해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유족의 승낙을 받지 않고 해부하기 위해 형식적인 서류 갖추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또한 이는 ‘현행 법률’이 실제로 해부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후시신기증자들에 의한 해부실습교육을 독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하겠다.

2) 사후시신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제출한 유언장을 포함한 서류를 관리하는 방법

조사대상 28개 대학에서 32가지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어 일부 대학에서는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해부학교실 시체관리직원(보건의)이 관리하는 대학이 20개교로 62.50%, 의과대학 행정실 직원이 10개교 31.2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조교 1개교, 기타 1개교도 있어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이와 관련하여 볼 때, 물론 대학마다 각기 다른 사정이 있겠으나 학장의 지시를 받는 행정실 직원이 학장이 인수한 시체가 아닌 앞으로 사후시신기증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 사망시 시체인수 등에 기동성이 떨어져 신신시체의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후시신기증의 홍보에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일부

Table 2. Methods of management submitted documents of the 28 medical schools in Korea

Methods	No.	Percent	Remarks
College administrative personnel	10	35.7	Answers can be overlapped
Chief of anatomy department	0	0.0	
Assistant of anatomy department	1	3.6	
Cadaver-managing personnel	20	71.4	
The others	1		

대학에서는 복수의 관리자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유언장을 포함한 매우 중요한 개인 기록이 있는 서류들을 복수로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다.

3) 사후시신기증 등록자 사망시 시체의 인수 태도

본래는 본인의 유언에 의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행위이면 당연히 유족 전체나 일부가 반대해도 인수를 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전체 28개 대학 중 3개 대학은 유족 전체가 반대하면 인수를 포기하고 나머지 25개 대학은 유족 일부가 반대해도 인수를 포기하여(Table 3) 모든 대학에서 본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의 뜻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법의식의 문제라고 생각되어 아쉽지만 당해 의과대학에서 유족과의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그러나 이 또한 ‘현행 법률’로는 강제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4) 해부실습후 기증자 시체의 처리방법

조사대상 28개교에서 32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 일부대학에서는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후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 ‘유족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가 22개교로 78.6%로 가장 많았고, ‘유언에 따라 화장 후 대학 납골당에 안치한다’가 6개교로 21.4%, ‘유언과 관계없이 화장 후 대학 납골당에 안치한다’도 3개교 10.7%였으며, ‘유언에 따라 화장 후 시(군) 납골당에 안치한다’가 1개교 3.6%, ‘기타’가 2개교였다(Table 4). 실습 후 시체의 처리에 관해서 ‘현행 법률’ 제14조제1항에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교부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그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그 시체를 화장하여 유해를 납골당에 안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인수가 없는 시체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기증자 시체의 실습 후 처리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이 없어 언제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다. 실습이 끝난 뒤 유체의 처리는, 유언에 남긴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유언에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유족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현행 법률’에서 인수

Table 3. Attitude of corpse acceptance of the 28 medical schools in Korea

Attitude	No.	Percent	Remarks
Give up accept when all the bereaved family oppose	3	10.7	
Accept although all the bereaved family oppose	0	0.0	
Give up accept although some of the bereaved family oppose	25	89.3	
Accept when some of the bereaved family oppose	0	0.0	
Total	28	100.0	

Table 4. Management of post-dissection corpse of the 28 medical schools in Korea

Management	No.	Percent	Remarks
Not related with will, install at college charnel after cremation	3	10.7	
Not related with will, install at local charnel after cremation	0	0.0	
According to the will, install at college charnel after cremation	6	21.4	Answers can be overlapped
According to the will, install at local charnel after cremation	1	3.6	
Manage according to the bereaved family only	22	78.6	
The others	2	7.1	

자가 없는 시체의 처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 시신들을 시군구로부터 인수받아 해부실습에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해부실습용 시신이 대부분 사후시신증자에 의해 확보됨을 감안하면, ‘현행 법률’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짐은 물론 이 법으로는 사후시신증자들의 실습후 처리에 대해서 달리 규정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5) 사후시신증자에 대한 해부적격심사위원회(가칭)의 구성 여부

전체 28개교중 26개교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실제 ‘현행 법률’ 제 11조제2항에는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시체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전염성 질환의 유무를 의미하며, 시체를 인수한 뒤에는 냉동 또는 방부처리에 의해 대부분의 전염성 세균은 사멸된다 하여도 일부 세균은 생존하여 해부실습자에게 전염될 수 있으며 이의 방지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 마땅히 어떤 방법으로든 해부적격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은 해부실습실의 방부제 위생성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생각이다. 더구나 일부 대학에서는 실습을 지도하는 교수 또는 조교 인력이 의사가 아닌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습실 통제에 어려움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실습장 오염의 위험성은 상존한다고 본다. 나아가 실습용 시체가 헌체에 의해 기증되어질 경우에는 마땅히 인수시에 전염성 질병의 유무가 가려져야 실습전 처치에 관여하는 인력으로서의 전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해부실습 교육에 사용할 시체는 과도한 부검을 시행했던 시체는 부적합할 것이고 악성종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과도

Table 5. Existence of dissection eligibility inspection committee of the 28 medical schools in Korea

Dissection eligibility inspection committee	No.	Percent	Remarks
Yes	2	7.1	
No	26	92.9	
Total	28	100.0	

한 변형이 이루어진 시체도 적합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할 때 마땅히 해부적격심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점은 문제이다.

6) 헌체운동과 관련된 사항

본래 ‘헌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들여온 용어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가 아직 우리말사전 어느 곳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후에 자신의 육신을 해부실습을 포함한 의학의 연구와 교육을 위해 조건없이 기증하는 행위로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2003년 김원식 등(Kim 등 2003)에 의해 최초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도 일부 의과대학에서 위령제 조사 또는 추도사 등에서 언급되어 왔다. 헌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이미 1983년에 최초로 제정된 의학 및 치학 교육을 위한 헌체에 관한 법률(Ministry of Justice of Japan 1999)에서, ‘헌체의 의사란, 자기의 신체를 사후 의학 및 치학 교육으로 행해지는 신체의 정상적인 구조를 밝히기 위한 해부(이하, 정상해부라 한다)의 해부체로서 제공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헌체라는 용어를 법률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체라는 용어가 일본식 용어라는 차원에서 그 사용이 우리의 정서와 잘 맞지 않는다면 사용된 용어의 역사가 일천한 만큼 ‘사후시신기증’과 같은 다른 용어로 바꿔 사용하자는 약속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 의과대학에서 해부실습용 시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후에 자신의 육신을 조건없이 기증하는 행

위를 헌체라고 하고 있고, 헌체운동을 통해 기증자를 확보, 등록 및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용어의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체는 자신의 육신을 사후에 기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전에 유언이 필요하다고 보아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요식적인 유언장을 준비해 두고 기증희망자로 하여금 그곳에 날인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본래 민법상 유언(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Korea 2009)이란 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재산과 같이 보아 유언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은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헌체활동과 더불어 생겨난 조직을 헌체등록자 모임이라고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각 의과대학에서 헌체등록자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 28개교 가운데 1개 대학뿐으로서(Table 6) 각 대학마다 ‘백국회’라는 기증자 모임이 구성되어 있고 그들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Sato 2007)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를 조사한 바를 보면,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는 대학은 4개 대학 뿐이고 나머지 24개교에서 31가지 방법으로 예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중 ‘화장후 대학납골당 안치’ 19개 대학 67.9%, ‘대학병원 진료비 일부 경감’과 ‘대학행사 등에 초청’이 각각 2개교 7.1%, ‘화장후 대학 수목장 안치’ 1개교, 기타 3개교 등으로 나타나(Table 7) 많은 대학에서 어떤 형태든지 한 두 가지의 예우를 하고 있는

Table 6. Existence of the meeting of donation-registered people of the 28 medical schools in Korea

Meeting of donation-registered people	No.	Percent	Remarks
Yes	1	3.6	
No	27	96.4	
Total	28	100.0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과대학에서 해부실습용 시체를 확보하는데 있어 일반인들의 헌체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예우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헌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사후 육신을 의학교육과 연구를 위해 기증하는 숭고한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헌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예우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고 찰

현재 우리나라 각 의과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부실습교육에 관련된 법규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Korea 2010)이 유일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법률은 최초 시체해부보존법(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Korea 1962)이라는 이름으로 1962년에 제정되어 1995년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Korea 1995)로 개정되고 동명의 법률 제9846호로 개정되어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기까지 12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해부실습교육 현장과는 거리가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법률의 제정목적으로, 이 법이 의학의 교육과 연구에 기여하는 수준을 사인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의 적정을 기하는 정도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학의 교육과 연구를 통해 의학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해부실습교육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 법률의 제정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의 사후시신기증은 거의 없고 무연고 행려 사망자가 사망했을 때 시군구청으로부터 그들을 인수받아 해부실습교육에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각 의과대학이 대부분 사후에 자신의 육신을 해부실습교육에 사용해 달라며 유언으로 기증한 사람들의 유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법제정 당시와는 제정 목적이

Table 7. Honorable treatments of donation-registered persons of the 28 medical schools in Korea

Honorable treatments	No.	Percent	Remarks
No honorable treatment	4	14.3	
Partial reduction of college hospital cost	2	7.1	
Invitation at college events	2	7.1	
Install at college charnel after cremation	19	67.9	Answers can be overlapped
Install at other college burial plates after cremation	1	3.6	
The others	3	10.7	

달라져야 할 것이나 여러 차례의 일부 또는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다른 조항들과의 관련성으로 보아 제정목적에 달리 바꾸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특별히 관련된 조항은 해부의 대상을 정한 제4조라고 본다. 물론 일반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사후 시체를 해부할 수 있도록 했을 때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시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는 유족의 승낙없이 해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해부실습 현장에서 사후 기증자들을 해부할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해부실습을 할 때 유족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여러 경우중 하나로서 유언을 남겼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각 대학이 벌이고 있는 해부를 전제로 한 사후시신기증운동과의 관련성은 결여되어 있다. 아울러 최근 해부실습대상 대부분이 유언에 의한 기증자임을 감안할 때 이 규정은 실질적으로 해부실습교육과 연구를 활성화 시키는 데 적합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체해부보존법(Ministry of Justice 2005)의 규정을 비교할 수 있겠다. 일본의 사체해부보존법은 그 법률의 입법취지가 사인의 규명, 전염병 등의 원인 규명, 무연고자의 해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해부실습교육에 쓰이기 위하여 일반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사후 시체를 기증했을 때 유족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규정을 넣지 않은 것은 이 법률의 입법취지가 모호해 지기 때문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Ministry of Government Registration of Korea 2010)에서도 이의 삭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다음은 ‘현행 법률’ 제11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해부실습자는 해부실습중 범죄 또는 전염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 시체를 발견했을 때는 이를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 해부실습 교육은 정해진 해부 술기를 통해 인체의 정상구조물과 변이구조물들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과정은 의사가 아닌 사람도 수년간의 교육을 받고 나면 가능한 학문 분야이다. 그러나 범죄와의 관련성이나 전염병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의사가 아니면 구별하기가 어렵다. 특히 대다수의 의사들이 기초의학을 꺼려 많은 해부학 교수들이 비의사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법률로 해부실습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전임강사의 직으로 5년 이상의 해부에 관한 연구, 교육업무에 종사하고, 최근 5년간 50체 이상의 해부보조업무에 종사하고,

그중 25체 이상에 대해서는 스스로 주가 되어 해부를 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충분한 경험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Yamashina와 Shibata 2010) 우리와 비교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병리학교실에서는 수련의제도를 두고 엄격히 수련하고 있으나 해부학교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합리적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를 보완하고 또한 헌체로부터 실습후 처리까지의 전과정을 윤리적, 법률적, 학문적 및 보건위생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미 우리나라의 2개 의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칭 해부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다음은 실습후 시체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물론, 실습후에 화장할 것이나 또는 매장을 할 것이나 문제도 있고 화장할 경우 유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나 문제도 따를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기증자의 유언이고 다음으로는 유족의 뜻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교부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그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그 시체를 화장하여 유해를 납골당에 안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실습용 시체가 사후기증자에 의해 확보되고 있는 현실과는 거의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2/3정도가 유족의 뜻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점과 최근에는 화장이 보편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목장 등 새로운 장법이 허용되는 등 장법에 빠른 변화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하여 유족들과의 분쟁 가능성 등도 있어 이에 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이 이것까지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므로 다른 법률의 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설문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해부실습용 시체의 확보를 위해 사후에 자신의 육신을 의학교육과 의학발전을 위해 기증해 달라는 헌체운동을 하고 있고 그들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헌체등록자들에게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주어가며 기증자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일로서, 이를 통해 그들의 의학수준을 선진국으로 올려놓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헌체와 관련된 이렇다 할 법률적 근거가 아직 없다. 일본이 이미 1983년에 의학 및 치학 교육을 위한 헌체에 관한 법률(Ministry of

Justice 1999)을 제정하여 일반인들이 사후에 자신의 육신을 의과대학에 기증하여 해부실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법률은 그 제정 목적이 헌체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부실습교육이 의학 및 치학의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기본이 됨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해부실습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음에 의미가 크고 또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전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Sato 2007). 아울러 이 법률 (Ministry of Justice of Japan 1999)의 제6조에 ‘학교의 장은, 정상해부의 해부체로써 사체를 수령할 때는,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해진 대로, 해당 사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것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하여, 해부실습용 시체의 관리는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앞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헌체자나 기타 해부실습 시체의 관리가 행정실 직원, 해부학교실 교수, 또는 조교, 또는 기타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되며, 제7조에서는 ‘문부과학대신은 헌체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해서, 그 요구에 응해, 그 활동에 관해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사후에 자신의 육신을 해부실습에 써달라고 헌체한 사람들의 모임까지 지원하고 있고, 제8조에는 ‘나라는, 헌체의 의의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어, 국가가 해부실습 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의학발전에 앞장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다. 비록 우리가 1990년대 후반까지 유교적 관습으로 인해 이러한 유형의 법률제정이 쉽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과감히 의학교육과 연구를 위해 헌체관련법의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현행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은 의학 교육과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것은 사실이나, 해부실습의 대상, 해부실습 대상자의 실습 후 처리, 사후시신기증자의 관리 등 여러 면에서 제정 당시와 현재로 이어지는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해부실습 현장과 거리가 크기 때문에 이의 현실적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서독 등의 선진국들과 마

찬가지로 의과계 대학 등에 대한 국민들의 헌체가 관습화 되어 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헌체등록과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생각이다. 조속한 헌체관련법의 제정을 통해, 헌체등록자의 권리 보호와 의사의 확보는 물론, 가족 및 유족의 의사가 무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당연히 헌체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헌체등록의 법제화를 통해 아직도 헌체자의 대부분이 사회중하위권 계층에 머무르고 있는 현상 (Kim 등 2003)을 개선시켜 나가고, 이를 위해 우선 의사나 교수 자신이 헌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자세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법률에 근거한 헌체운동을 통해 헌체 해부에 내재되어 있는 숭고한 인도적 가치를 일반 국민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협력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참 고 문 헌

- Kim WS, Lee YH, Kim SI, Yang TC, Han SR : New trend of the cadaver donation movement. *Chungnam Med J* 30: 1-7, 2003. (in Korean)
- Ministry of Justice of Japan : Act on Body Donation for Medical and Dental Education. No. 160, 1999. 12. 22 enforced. (in Japanese)
- Ministry of Justice of Japan : Postmortem Examination and Corpse Preservation Act. No. 83. 2005. 7. 15 enforced. (in Japanese)
- Ministry of Government Registration of Korea : Act on Corpse Dissection and Preservation. No. 4915. 1995. 7. 1 enforced. (in Korean)
- Ministry of Government Registration of Korea : Act on Corpse Dissection and Preservation. No. 9846. 2010. 12. 30 enforced. (in Korean)
- Ministry of Government Registration of Korea : Civil Law. No. 9650, Chapter 2, Will, 2009. 8. 9 enforced. (in Korean)
- Ministry of Government Registration of Korea : Corpse Dissection and Preservation Law. No. 1021, 1962. 4. 11 enforced. (in Korean)
- Sato T : Process of development of body donation law in Japan. *Acta Anatomica Nipponica* 82: 63-71, 2007. (in Japanese)
- Yamashina S, Shibata Y : Gross anatomy dissection and legal control. *Acta Anatomica Nipponica* 85: 121-123, 2010. (in Japanese)

Current Anatomical Cadaver Dissection and the Limitation of the Act of Corpse Dissection and Preservation

Won-Sik Ki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bstract : The Act of Corpse Dissection and Preservation is the prime law related with anatomical cadaver dissection in Korea. Consider the social and cultural situation at the year of 1995 when the law established, it has much epochal contents. Now, however, it has many regulations, such as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the law, object of dissection, management of cadaver after dissection, and the lack of body donation movement, which are not coincide with current anatomical dissection field.

In order to supplement such insufficiencie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ct of Corpse Dissection and Preservation as soon as possible. Furthermore,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a new law supporting the body donation movement and management for activation of anatomical dissection education, which eventually extend the basis of the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Keywords : Cadaver dissection, Act of Corpse Dissection and Preservation, Corpse donation